

**2019 직업상담사 2급 한권으로 끝내기 추록**  
**(2018.11.5. 발행 기준)**

p.49

② 투사(Projection)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 느낌, 태도 등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욕구나 감정 혹은 생각 등을 타인의 것으로 왜곡하여 지각한다.

p.59

① 대인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p.73 중복내용 삭제

•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모두 인지에서 나온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인간이 부적응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부적응적 감정이나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적응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p.153

②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기(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 축소, 정당화, 훼손

p.320 핵심키워드

Work-net 구직창의 기업형태별 → Work-net의 기업형태

Work-net 직업정보검색(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전망 외 삭제)

p.329

(1) 채용정보

① 채용정보 상세검색

키워드, 직종(최대 10개), 지역[지역별(최대 10개),역세권별, 산업단지별] 경력, 고용형태,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졸(2~3년), 대졸(4년), 석사, 박사, 학력무관], 희망임금(연봉, 월급, 일급, 시급), 이메일입사지원, 기업형태(대기업,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강소기업, 코스피/코스닥, 외국계기업, 일학습병행기업, 벤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채용구분(상용직 일용직), 근무형태, 근로시간단축, 교대근무여부, 식사(비)제공, 기타 복리후생, 우대조건(청년층, 장년, 여성), 장애인 채용희망, 병역특례, 자격면허, 전공, 외국어, 기타 우대사항, 마감일, 등록일, 정보제공처

② 채용캘린더 : 경력, 학력, 기업형태, 고용형태, 정보제공처

(2) 공채특별관, (3) 4차 산업혁명 (삭제)

p.330

전체 삭제

p.331

전체 삭제

p.332

(2) 직업·진로

① 직업심리검사

㉠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종의 심리검사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 심리검사명 :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고등학생 적성검사, 청소년용 적성검사(중학생용), 직업가치관검사, 청소년 진로발달검사, 청소년 직업인성검사 단축형, 청소년 직업인성검사 전체형, 고교계열흥미검사, 대학 전공(학과) 흥미검사, 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 검사안내

측정내용	하위척도(문항 수)
홀랜드의 일반흥미(6개 유형) 기초흥미분야(13개 분야)	활동(61) 자신감(61) 직업(63)

㉤ 성인 대상 심리검사

㉡ 성인을 대상으로 13종의 심리검사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 심리검사명 :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직업선호도검사 S형, 직업선호도검사 L형, 구직준비도검사, 창업적성검사, 직업전환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영업직무 기본역량검사, IT직무 기본역량검사, 준고령자 직업선호도검사, 대학생 진로준비도검사, 이주민 취업준비도검사,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알자! 알자! 알짜Tip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검사안내

p.334~335

㉣ 직업선호도검사(VPI)

S형	L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대상 : 만 18세 이상</li> <li>• 검사시간 : 약 25분 소요</li> <li>• 주요내용 : 개인의 흥미유형 및 적합 직업 탐색</li> <li>• <b>검사안내</b> : 흥미검사(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대상 : 만 18세 이상</li> <li>• 검사시간 : 약 60분 소요</li> <li>• 주요내용 : 개인의 흥미유형 및 성격, 생활사 특성을 측정하여 적합직업 안내</li> <li>• <b>검사안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미검사(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li> <li>- 성격검사(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li> <li>- 생활사검사(대인관계지향, 독립심, 가족친화, 야망, 학업성취, 예술성, 운동선호, 종교성, 직무만족)</li> </ul> </li> </ul>

## ② 직업정보

### ㉠ 직업정보 찾기

#### ㉡ 키워드 검색

#### ㉢ 조건별 검색

㉣ **평균연봉**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직업전망** : 매우 밝음(상위 10% 이상), 밝음(상위 20% 이상), 보통(중간 이상), 전망 안 좋음(감소 예상 직업)

㉥ **분류별 찾기** : 관리·경영·금융·보험, 교육·연구·법률·보건, 사회복지·문화·예술·방송, 운송·영업·판매·경비, 미용·숙박·여행·스포츠·음식, 건설·기계·재료·화학·섬유, 전기·전자·정보통신, 식품·환경·농림어업·군인, 녹색직업

㉦ **지식별 찾기** : 경영 및 행정, 사무, 경제와 회계, 영업과 마케팅 등

㉧ **업무수행능력별 찾기** : 읽고 이해하기, 듣고 이해하기, 글쓰기, 말하기 등

㉨ **통합찾기(지식, 능력 흥미)** : 흥미 선택, 지식 선택, 업무수행능력 선택, 환경 선택

㉩ **테마별 찾기** : 여행, 음식, 호텔, 수송, 관광레저, 게임, 애니메이션, 순수예술, 영화, 음반, 금융, 스포츠, 의료, 과학수사와 법, 문화/예술, 방송/언론, 광고/마케팅, 디자인, 정보통신, 건설/교통

㉪ **대상별 찾기** : 인문계 대졸 청년, 3050 여성, 중장년

㉫ **이색직업별 찾기** : 경영/기획/금융, 공공/안전, 보건/의료, 사회복지/교육, 과학/공학/IT,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미용/여행/음식, 스포츠/동물

㉬ **신직업·창직 찾기** : 청소년,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3050여성, 중·장년, 창업직종, 창조직업

### 직업검색 내용

- 하는 일 : 직무개요, 수행직무, 관련직업
- 교육/자격/훈련 : 필요 기술 및 지식, 학력분포, 전공학과분포, 관련학과, 관련자격 & 훈련정보
- 임금/직업만족도/전망 : 임금(하위 25%, 중위값, 상위 25%), 직업만족도, 전문가가 분석한 일자리전망, 재직자가 생각하는 일자리전망(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일자리 현황
- 능력/지식/환경 : 업무수행능력 중요도, 업무수행능력 수준, 지식 중요도, 지식수준, 업무환경
- 성격/흥미/가치관 : 성격, 흥미, 직업가치관
- 업무활동 : 업무활동 중요도, 업무활동 수준  
위 ④ 및 ⑤와 ⑥ 각 항목의 점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 중요도 정도를 100점 만점(백분위점수)으로 보여 준다.

- ㉠ 한국직업사전 : 우리나라의 직업 총람으로서 체계적 직무분석을 통해 수행하는 작업과정(수행직무)과 각종 부가직업정보와 직업/산업분류 코드를 제공한다.
- ㉡ 한국직업전망 : 우리나라 대표직업 약 200여 개에 대한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을 담았다. 일자리 전망 외에 하는 일, 근무환경, 되는 길(교육 및 훈련, 관련 학과, 관련 자격 및 면허, 입직 및 경력개발), 적성, 흥미, 성별·연령·학력 분포, 평균 임금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 ㉢ 직업 동영상 : 직업군별, 신직업, 국제기구, 기업직무소개
- ㉣ 직업인인터뷰

### ③ 학과정보

#### ㉦ 학과검색

- ㉧ 키워드 검색 : 학과명, 전공 또는 관련 키워드 입력
- ㉨ 계열별 검색
  - ㉩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 ㉪ 이색학과정보(식품/웰빙/여가, 과학/정보통신, 보건의료/교육, 문화/예술/스포츠, 경영/금융/보안, 방송/이벤트, 기타)
- ㉫ 전공 진로가이드, 학과정보FAQ, 학과정보 동영상

### ④ 진로상담

상담신청, 상담FAQ

p.346

#### ㉬ 되는 방법

p.349~350

5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삭제

p.350

### 5 학과정보

#### (1) 학과검색

##### ① 학과소개

개요, 적성 및 흥미

##### ② 관련학과/교과목

관련학과, 주요교과목, 취득자격면허(국가자격, 민간자격, 해외자격)

③ 개설대학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교

④ 진출직업

⑤ 취업현황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및 교육기본통계조사

㉡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제외인정자)} × 100

남성취업률 = (남성취업자 / 남성졸업자 - 남성외국인 - 남성진학자 - 남성입대자) × 100

여성취업률 = (여성취업자 / 여성졸업자 - 여성외국인 - 여성진학자) × 100

(2) 학과분류

p.355

알자! 알자! 알짜Tip 잡맵(Job Map) (삭제)

6 취업지원프로그램

(1) 취업희망 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찾도록 하여 자신감 회복과 취업 희망(인간관계 향상과 취업 및 원만한 사회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2) 행복내일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의욕 강화와 취업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발견,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이해 등을 통해 취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 성취 프로그램

구직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악화를 예방하고 강한 재취업 의욕을 부여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며, 구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향상시켜 새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이다.

(4) 취업특강

취업에 필요한 기본정보(이력서·자기소개서, 면접요령 등) 및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알아보기 위한 직업심리검사, 고용센터 100% 활용하기 등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이다.

(5)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3~5일)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단기(3~4시간)과정이다.

(6)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행복오름)

근로능력수급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경력설계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대상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7) 성실(중장년층) 프로그램

고령자(55세 이상)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알찬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실 수 있도록 구직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이력서 작성, 면접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성실이란 "성(成)공적인 실버(silver)"라는 의미와 동시에 성실하게 차곡차곡 준비하면 목적인 바를 이룬다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8) 주부재취업설계 프로그램

취업을 원하나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기초직업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취업 분야 결정 등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취업 분야 진입을 위한 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9) WIND(여성결혼이민자)지원 프로그램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10) CAP+(청년직업지도) 프로그램

청년(만 34세 이하) 취업준비생들이 자신의 직업흥미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꿈을 설계해 나가는 가운데, 합리적인 진로 및 직업 선택과 취업을 돕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CAP+프로그램은 'Career Assistance Program Plus'의 약자로 이미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여, "최고(CAP)에 하나를 더 더한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11) allA(청년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오랜 실직이나 취업 실패로 구직 의욕을 잃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 진로 좌표를 만들어 주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협력적 문제 해결에 관련된 능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 '올라'는 '오르다'라는 뜻으로, '날아 올라', '뛰어 올라', '박차고 올라' 등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영문명 allA는 우리는 모두 최고(A)인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담고 있다.

(12)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청년(만 34세 이하) 취업준비생들이 스펙초월채용 시대에 맞게 지원하려는 회사의 산업특성과 조직특성, 직무특성을 이해하고 직무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구직처를 탐색하고 구직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13) Hi(고졸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특성화고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고교 졸업 및 병역이행 후 취업하고자 하는 20대 초반의 청년층의 미래설계와 취업준비를 돕고 첫 직장에 원활하게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Hi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은, 고졸(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고등학교(highschool)'라는 단어의 영문 앞 글자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 또는 자녀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위치해 오다가 세상에 첫 발을 디고 사회에 새로이 진출한다는 의미로 '안녕(Hi)'이라는 인사말의 영문 단어를 의미한다.

p.356

(1) 직업훈련정보

구직자훈련과정, 근로자훈련과정, 기업훈련과정, (청년선호우수과정 삭제) 일학습병행과정, 원격(인터넷, 우편)훈련과정, 중장년 특화과정, 훈련기관평가정보

(5) HRD 길라잡이

HRD-Net 활용가이드, HRD-Net 활용기, 직업훈련 수기공모전 웹툰, HRD-Net 소개

(8) 국가기술자격대여근절 캠페인

불법대여신고, 대여근절캠페인

p.362

12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정보 상세검색 중 기업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강소기업      ②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 ③ 외국계기업    ④ 금융권기업

해설

기업형태

대기업,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강소기업, 코스피/코스닥, 외국계기업, 일·학습병행기업, 벤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p.368

30 ② 되는 방법

p.369

33 워크넷(직업·진로)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 검색방법 중 조건별 검색 2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34 워크넷(직업·진로)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에서 직업을 찾는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통합 찾기      ② 지식별 찾기
- ③ 근무지역별 찾기    ④ 업무수행능력별 찾기

해설

직업정보 찾기 : 키워드 검색, 조건별 검색, 분류별 찾기, 지식별 찾기, 업무수행능력별 찾기, 통합 찾기, 테마별 찾기, 대상별 찾기, 이색직업별 찾기, 신직업·창직 찾기

35 워크넷(직업·진로) 직업정보에서 '이색직업'의 분류가 아닌 것은?

- ① 미용/여행/음식    ② 과학/공학/IT
- ③ 보건/의료      ④ 차세대융합기술

해설

이색직업

경영/기획/금융, 공공/안전, 보건/의료, 사회복지/교육, 과학/공학/IT,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미용/여행/음식, 스포츠/동물

36 워크넷(직업·진로)에서 제공하는 학과정보가 아닌 것은?      2011년 2회, 2016년 3회

- ① 관련학과/교과목      ② 개설대학
- ③ 진출직업      ④ 졸업자 평균연봉

해설

학과정보(학과검색내용)

- 학과소개 : 개요, 적성 및 흥미
- 관련학과/교과목 : 관련학과, 주요교과목, 취득자격면허(국가자격, 민간자격, 해외자격)
- 개설대학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 진출직업
- 취업현황

p.370

40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정보 중 의약계열에 해당하는 학과가 아닌 것은? 2010년 4회

- ① 의료공학과    ② 치기공과  
 ③ 생명과학과    ④ 응급구조과

해설

생명과학과는 자연계열에 해당한다.

40 ③

p.382

분류항목표

합계	10	52	156	450	1,231
----	----	----	-----	-----	-------

p.395

8 분류항목표

p.427

㉔ 건설 :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방수, 실내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지적, 응용지질, 조경, 철도토목, 해양공학, 해양환경 등

㉕ 농림어업 : 유기농업, 종자, 축산, 산림, 임산가공, 임업종묘, 수산양식, 어로 등

p.429

• 분류

-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며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의 순으로 구성한다.

p.465



노동공급의 소득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임금 이외 소득의 증가로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 ② 임금소득의 증가로 여가를 증가시키고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 ③ 임금소득의 증가로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 ④ 노동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소득효과 > 대체효과(여가 : 우등재)

임금이 상승하면 임금소득의 증가로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정답 ②

p.520

## 02 실업의 대책

### 1 실업정책

p.532

####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하여 근로자·사용자·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각 2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과 전국규모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여야 하며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자로 지정해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p.569

#### 핵심 키워드

- 근로조건 • 근로감독관의 권한
- 근로계약의 성립과 내용                      • 금지되는 근로계약 3가지
-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                      •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삭제)
- 부당해고 등의 구제(구제신청, 이행강제금 부과)                      • 금품청산 및 귀향여비의 지급
-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임금지급의 4원칙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 비상시 지불 및 휴업수당
- 임금채권 • 기준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 단시간 근로제도
- 연소자와 여성근로자 • 재해보상
- 휴식(휴게,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 취업규칙

p.570

#### (9)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삭제)

p.576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预告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삭제)

p.594

(3) 감급한도액

p.599

11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를 할 때 포함해  
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2017년 2회

- ① 퇴직금
- ② 해고사유
- ③ 해고일정
- ④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설

신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 : 해고사유, 해고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  
고일정

11 ①

p.611

(3) 임금 외의 금품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용자 등 복리후  
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p.615

(2)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  
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  
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  
출할 수 있다.

p.626

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2017년 1회

- ①모집과 채용    ②임금
- ③근로시간      ④교육

해설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할 사항 :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08 ③

p.655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 ②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에 대한 진단
- ③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 ④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지원

-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에 대한 진단
-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 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은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①

p.687~688

②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총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총당할 수 있다.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총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총당할 수 있다.

p.689

② 위 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적용 제외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 공무원. 다만,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698~699

(3) 수급권의 보호

- ②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전액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1)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②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4) 수급자격의 인정

-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p.700

- ⑤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13만 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만 2천원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p.701

(7)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 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9) 대기기간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p.707

㉔ 기초일액이 13만 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만 2천원을 해당 기초일액으로 한다.

p.709

(③ 추가되고 번호체계 하나씩 밀림)

③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육아휴직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⑧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p.710

(3) 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위 (1)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p.713 (③ 추가되고 번호체계 하나씩 밀림)

(3) 기금의 용도

③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⑦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p.714~715

(4) 심사의 청구

①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p.717

03 다음 중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 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 ②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
- ③ 근로자파견사업에 고용된 파견근로자
- ④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해설

- 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대상 근로자이다.
- ③ 근로자파견사업에 고용된 파견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근로자이다.

p.725

(4)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근로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p.839

100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